

[붙임1] : 번 안

##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

의 안 번 호	6729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16.

발 의 의 원 : 이태손의원(1명)

동 의 의 원 : 조경구의원(1명)

### 1. 제안 이유

2023년 9월 7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「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도시공원의 관리는 구·군의 위임사무이므로 대구시의 시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번안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

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.

안 제3조 중 “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”을 “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”으로 한다.

## 번안 조문대비표

조 례 안	번       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 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<u>위한 시책을 마련</u> <u>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</u> <u>한다.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 <u>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 산책로”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.
3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
2.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
3. 맨발걷기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내 보행로에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** 시장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산책로의 조성·관리
2.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보수
3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사무의 위임)** 시장은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재정지원 등)**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

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이하 “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입안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.

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(公報)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**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·관리한다.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**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6조의5(건강도시의 조성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1.] [시행일: 2023. 12. 22.] 제6조의5